

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7년 10월 31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 박상기  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4970호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의 죄”를 “제7조(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 등) 및 제8조(장애인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)의 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